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 11. 1.	규칙 제 968호	일부개정	2013. 11. 25.	규칙 제1374호
전문개정	1999. 6. 1.	규칙 제1027호	일부개정	2014. 1. 17.	규칙 제1381호
개정	1999. 9. 1.	규칙 제1045호	일부개정	2014. 3. 20.	규칙 제1385호
개정	1999. 12. 6.	규칙 제1053호	일부개정	2014. 6. 12.	규칙 제1389호
개정	2000. 4. 1.	규칙 제1066호	일부개정	2014. 7. 29.	규칙 제1395호
개정	2000. 10. 12.	규칙 제1079호	전부개정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개정	2000. 12. 29.	규칙 제1085호	일부개정	2015. 2. 27.	규칙 제1417호
개정	2001. 6. 30.	규칙 제1099호	일부개정	2015. 8. 13.	규칙 제1426호
개정	2001. 12. 31.	규칙 제1113호	일부개정	2016. 3. 2.	규칙 제1440호
개정	2002. 4. 15.	규칙 제1119호	일부개정	2016. 6. 29.	규칙 제1446호
개정	2002. 7. 15.	규칙 제1126호	일부개정	2016. 10. 28.	규칙 제1458호
개정	2002. 11. 11.	규칙 제1131호	일부개정	2017. 4. 17.	규칙 제1471호
개정	2002. 12. 31.	규칙 제1134호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개정	2003. 7. 9.	규칙 제1147호	일부개정	2017. 6. 15.	규칙 제1477호
개정	2003. 8. 27.	규칙 제1151호	일부개정	2017. 9. 28.	규칙 제1484호
개정	2003. 10. 31.	규칙 제1154호	일부개정	2017. 12. 18.	규칙 제1492호
개정	2003. 12. 30.	규칙 제1158호	일부개정	2018. 4. 4.	규칙 제1499호
개정	2004. 6. 18.	규칙 제1165호	일부개정	2018. 7. 31.	규칙 제1509호
개정	2004. 9. 7.	규칙 제1170호	일부개정	2018. 10. 24.	규칙 제1512호
개정	2004. 11. 16.	규칙 제1173호	일부개정	2019. 4. 10.	규칙 제1528호
개정	2005. 1. 27.	규칙 제1178호	일부개정	2019. 7. 5.	규칙 제1536호
개정	2005. 3. 29.	규칙 제1183호	일부개정	2019. 10. 28.	규칙 제1547호
개정	2005. 11. 30.	규칙 제1191호	일부개정	2020. 7. 10.	규칙 제1569호
개정	2006. 3. 9.	규칙 제1199호	일부개정	2020. 9. 11.	규칙 제1573호
개정	2006. 12. 29.	규칙 제1215호	일부개정	2021. 7. 9.	규칙 제1597호
개정	2007. 9. 27.	규칙 제1225호	일부개정	2022. 1. 10.	규칙 제1608호
개정	2008. 4. 1.	규칙 제1233호	일부개정	2022. 4. 20.	규칙 제1614호
전부개정	2008. 7. 18.	규칙 제1240호	일부개정	2022. 8. 12.	규칙 제162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개정	2009. 6. 24.	규칙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5. 22.	규칙 제1638호
개정	2009. 11. 12.	규칙 제1268호	일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1656호
일부개정	2010. 2. 23.	규칙 제1273호	일부개정	2024. 5. 17.	규칙 제1661호
일부개정	2010. 10. 7.	규칙 제128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1. 2. 8.	규칙 제1289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칙 제1679호
일부개정	2011. 6. 27.	규칙 제1303호	일부개정	2025. 6. 18.	규칙 제1686호
일부개정	2011. 9. 20.	규칙 제1309호	일부개정	2025. 7. 1.	규칙 제1687호
일부개정	2011. 12. 29.	규칙 제1315호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	2012. 3. 16.	규칙 제1324호	일부개정	2025. 7. 15.	규칙 제1688호
일부개정	2012. 8. 7.	규칙 제1334호	(안양시 읍무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11. 12.	규칙 제1342호	일부개정	2025. 7. 31.	규칙 제1692호
일부개정	2013. 1. 16.	규칙 제1354호	일부개정	2025. 12. 31.	규칙 제1705호
일부개정	2013. 3. 7.	규칙 제1355호	일부개정	2026. 5. 13.	규칙 제1711호
일부개정	2013. 8. 20.	규칙 제1368호	일부개정	2026. 5. 15.	규칙 제1714호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	2026. 7. 8.	규칙 제17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안양시 본청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2019. 10. 28., 2025. 12. 31.>

제2조(직무) ① 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2019. 4. 10.>

②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 업무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결정보좌관을 두며, 정책결정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4. 10.>

제2장 시 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 2018. 7. 31.>

제4조(기획경제실) 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고용노동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16. 10. 28., 2017. 6. 15., 2018. 4. 4., 2018. 10. 24., 2020. 7. 10., 2022. 1. 10.>

[제목개정 2017. 6. 15.]

제5조(안전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체육과장, 시민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2025. 12.

31.>

제6조(복지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20. 7. 10., 2022. 12. 30., 2024. 12. 31.>

제7조(도시주택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혁신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3. 2., 2017. 9. 28., 2018. 10. 24., 2019. 10. 28.,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2. 12. 30.>

제8조(도로교통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로과장, 공공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철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10., 2022. 1. 1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0.>

[본조신설 2019. 10. 28.]

[제목개정 2024. 12. 31.]

제9조(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대기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생태하천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 공원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AI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AI정

책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AI전략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1조(시 본청의 분장사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15.,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3장 직속기관 <신설 2025. 12. 31.>

제12조(보건소) ① 만안구보건소장과 동안구보건소장은 각각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15., 2025. 12. 31.>

②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24., 2022. 1.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3조(보건소의 분장사무) 보건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장 사업소 <신설 2025. 12. 31.>

제14조(평생학습원) 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만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5조(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도시설과장, 정수과장, 하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6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5. 1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7조(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5장 하부행정기관 <신설 2025. 12. 31.>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신설 2025. 12. 31.>

제18조(구청장) 구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3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9조(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6. 29., 2025. 12. 31., 2026. 5. 1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0조(구의 분장사무) 구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절 동 <신설 2025. 12. 31.>

제21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안양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안양6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안양7동장, 비산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병목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명학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석수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비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안양2동장, 안양3동장, 안양5동장, 석수2동장, 충훈동장, 박달동장, 호계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호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관양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부흥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인덕원동장, 부림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평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귀인동장, 범계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 10., 2023. 12. 29., 2024. 12. 31., 2025. 7. 1., 2026. 5. 13., 2026. 5. 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2조(동의 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신설 2025. 12. 31.>

제23조(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4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2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하고,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규칙 별표 참조]

②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참조]

③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건설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한다.

④ 안양시예산성과급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사업소

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5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별지(붙임1)와 같이 한다.

붙임1 생략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참조]

⑥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붙임2)와 같이 한다.

붙임2 생략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⑦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건설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을 별지(붙임 3)와 같이 한다.

붙임3 생략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참조]

⑧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고, 제4조제3호 중 “학습원”을 “교육원”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붙임4)와 같이 한다.

붙임4 생략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조]

⑨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붙임5)와 같이 한다.

붙임5 생략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조]

⑩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붙임6)와 같이 한다.

붙임6 생략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별

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참조]

부칙 <2015. 2. 27. 규칙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민원읍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감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안양시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2015. 8. 13. 규칙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제1426호 별표 1 참조)

부칙 <2016. 3. 2. 규칙 제1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참조]

②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하며, [별표 1],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참조]

③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며, “회계과, 녹색성장과”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식품안전과, 녹색성장과”를 “식품안전과”로 한다.

④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안양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각각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⑥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⑦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참조]

⑧ 안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하고, “건설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2016. 10. 28. 규칙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참조]

부칙 <2017. 4. 17. 규칙 제1471호,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참조]

②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소·원장”을 “실·국·소·원장”으로 하고, “과장(실장, 단장, 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과장 등(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하고, “국·과”를 “실·국·과”로 하며, “국·과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참조]

③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④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경제실”로 한다.

⑤ 「안양시예산성과급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⑥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홍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홍보실”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⑦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참조]

⑧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사실장과 감사실에”를 “감사관과 감사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⑨ 「안양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국장급”을 “실·국장급”으로 한다.

⑩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⑪ 「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장·소장·원장·구청장의”를 “실장·국장·소장·원장·구청장의”로 한다.

⑫ 「안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제상 국

의”를 “직제상 실·국의”로 하며,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며, “해당 국”을 “해당 실·국”으로 한다.

⑬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⑭ 「안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⑮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자목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장”을 각각 “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또는”을 “실·국장 또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국장,”을 각각 “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장은”을 “실·국장은”으로,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국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시의회”를 “실·국장, 시의회”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며, “예산업무담당국장”을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업무담당국장”을 각각 “예산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각각 “회계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한다.

제140조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참조]

부칙 <2017. 9. 28. 규칙 제1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8. 규칙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참조]

부칙 <2018. 4. 4. 규칙 제1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재생정책관”을 각각 “도시재생과”로 한다.

부칙 <2018. 7. 31. 규칙 제1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4. 규칙 제1512호>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0. 규칙 제1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규칙 제1536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한다.

②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교통국”으로 한다.

③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중 제4호(중전의 제3호) 소관부서란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④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

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환경보전과, 하천관리과, 자원순환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와”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로 한다.

②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환경사업소”를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녹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국”을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와)”로 한다.

③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환경사업소”를 “하천녹지사업소”로 한다.

별표 2 중 “환경사업소”를 “하천녹지사업소”로 한다.

④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제정책과장”를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⑤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020. 7. 6 규칙 제1569호> 참조]

부칙 <2020. 9. 11. 규칙 제1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규칙 제1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0. 규칙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를 “고용노동과”로 하고, “मान보건과, 동안보건과”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정책과”를 “철도교통과, 첨단교통과”로 한다.

②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를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③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021. 1. 10 규칙 제1608호> 참조]

부칙 <2022. 4. 20. 규칙 제1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2. 규칙 제1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참조]

②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참조]

③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을 “평생학습과, 만안구도서관, 동안구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마트시티과”를 “신성장전략과”로, “첨단교통과”를 “스마트도시정보과”로 한다.

④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첨단교통과”를 “스마트도시정보과”로 한다.

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안전총괄과”를 각각 “안전정책과”로 한다.

⑥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⑦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평생교육원”을 각각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을 각각 “학습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14조 본문 및 제15조 본문 중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를 각각 “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로 한다.

부칙 <2023. 5. 22. 규칙 제1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2023. 5. 22. 규칙 제1638호> 참조]

부칙 <2023. 12. 29. 규칙 제1656호>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0조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17. 규칙 제16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31. 규칙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녹지사업소”을 “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를 “도로교통국”으로 한다.

②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2 생략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2024. 12. 31. 규칙 제1679호> 참조]

부칙 <2025. 6. 18. 규칙 제1686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 규칙 제1687호,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박달1동장”, “박달2동장”을 각각 “박달동장”, “호현동장”으로 한다.

부칙 <2025. 7. 15. 규칙 제1688호, 안양시 읍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감사관의 분장사무란 중 “민원옴부즈만”을 “옴부즈만”으로 한다.

부칙 <2025. 7. 31. 규칙 제1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31. 규칙 제1705호>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13. 규칙 제1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15. 규칙 제1714호,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양8동장”, “안양9동장”을 각각 “명학동장”, “병목안동장”으로 한다.

부칙 <2026. 7. 8 규칙 제1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6. 7. 8.>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26. 7. 8.>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3] <개정 2026. 7. 8.>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4] <개정 2026. 7. 8.>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5] <개정 2026. 7. 8.>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표 6] <개정 2026. 5. 13.>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표(제23조 관련)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계		2,077 (19)	841 (8)	42	80	231	401	482 (11)
정무직		1	1					
	시장	1	1					
일반직		2,072 (19)	836 (8)	42	80	231	401	482 (11)
2급	소계	1	1					
	이사관	1	1					
3·4급	소계	1	1					
	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소계	13	6	1	2	2	2	
	행정	4	2	1		1		
	과학기술	3	1		2			
	행정·과학기술	6	3			1	2	
5급	소계	107	44	2	6	8	16	31
	행정	31	17	1		1	4	8
	의무	2			2			
	시설	7	7					
	행정·사회복지	15	5			1	2	7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3	1					2
	행정·녹지	3					2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9	3				4	2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5				3	2	
	녹지·시설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2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녹지·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6급	소계	468	200	8	20	65	98	77
	행정	142	72	6		10	29	25
	세무	16	5				11	
	전산	3	3					
	사회복지	19	6				5	8
	사서	3				3		
	공업	20	2		1	16	1	
	녹지	5	3				2	
	보건	6	2				4	
	환경	5	3				2	
	시설	42	29			1	12	
	방송통신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4	1			3		
	행정·세무	21	5				8	8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45	13			2	4	26
	행정·사서	11				1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3				2	
	행정·시설	17	8				8	1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운전	3	1		2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8	6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9	6			11	2	
	농업·보건	1	1					
	녹지·시설	4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6			6			
	사무운영·시설관리	4	1			2	1	
	행정·전산·사서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6	1					5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6급	행정 · 공업 · 농업	3	1				2	
	행정 · 공업 · 환경	4	2					2
	행정 · 공업 · 시설	3	1				2	
	행정 · 공업 · 방송통신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수의	1	1					
	전산 · 사서 · 방송통신	1				1		
	공업 · 보건 · 환경	2				2		
	공업 · 시설 · 방재안전	1	1					
	공업 · 환경 · 시설	1				1		
	녹지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5			5			
	행정 · 보건 · 약무 · 간호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2			2			
7급	소계	626 (2)	304 (2)	23	18	80	110	91
	행정	214 (2)	118 (2)	9		11	26	50
	세무	27	10				17	
	전산	8	7			1		
	사회복지	51	18				10	23
	사서	23				23		
	공업	36	9		1	18	8	
	녹지	9	7				2	
	수의	2	2					
	보건	11	2		1		8	
	간호	10			10			
	환경	9	7				2	
	시설	67	45			7	15	
	방송통신	13	9			2	2	
	운전	7	4	1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3	1			2		
	행정 · 세무	8	8					
	행정 · 전산	3	3					
	행정 · 사회복지	29	9	1		1	7	11
	행정 · 사서	4				4		
	행정 · 공업	5	2	1		1		1
	행정 · 농업	1	1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7급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8	12				6	
	행정·숙기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6	4			2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연구	1				1		
	공업·시설	8	3			2	3	
	공업·방송통신	2	1				1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환경연구	1				1		
	환경·시설	2				2		
	방송통신·전기운영	1	1					
	시설·방송통신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사서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13	3	10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보건	2	2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전산·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8급	소계	515 (3)	177 (3)	6	33	47	100	152
	행정	151 (3)	62 (3)	2	1	4	22	60
	세무	18	1				17	
	전산	2	1	1				
	사회복지	59	7				8	44
	사서	11				11		
	공업	23	6			8	9	
	녹지	7	5				2	
	보건	8	1		1		6	
	의료기술	1			1			
	간호	36	1		4			31
	환경	4	3				1	
	시설	39	24			4	1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운전	3	1	1			1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8급	전기운영	3				2	1	
	기계운영	2	2					
	화공운영	1				1		
	행정·세무	7	5				2	
	행정·전산	6	3		2	1		
	행정·사회복지	22	8				6	8
	행정·사서	5	1			4		
	행정·공업	11	1				1	9
	행정·농업	2				2		
	행정·보건	4	1		2	1		
	행정·환경	8	7				1	
	행정·시설	12	7				5	
	행정·속기	1		1				
	행정·방재안전	3	2				1	
	행정·방송통신	2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6	3			1	2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시설	2	2					
	공업·환경	6	3			1	2	
	공업·시설	8	3			5		
	공업·방송통신	1	1					
	녹지·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5			5			
	보건·간호	9	1		8			
	보건·환경	1				1		
	의료기술·간호	2			2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서·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전산·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9급	소계	341 (14)	103 (3)	2	1	29	75	131 (11)
	행정	82 (14)	29 (3)			4	14	35 (11)
	세무	11					11	
	전산	1				1		
	사회복지	62	12				5	45
	사서	7				7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공업	9	1			6	2	
	녹지	2	1				1	
	보건	5	4		1			
	환경	7	2				5	
	시설	25	13			1	1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운전	1					1	
	화공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56	3				7	46
	행정·사서	2	1			1		
	행정·숙기	1		1				
	행정·공업	6					1	5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7	2				5	
	행정·시설	24	19				5	
	행정·방재안전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3	3					
	사회복지·방송통신	1	1					
	공업·환경연구	1				1		
	공업·시설	8	1			3	4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보건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공업·보건·환경	2				2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공업·환경·시설	1				1		
전 문 경력관 나군	소계	1	1					
	화생방관리원	1	1					
별정직		3	3					
6급 상당	소계	3	3					
	비서	3	3					

※ 괄호()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